

2022년 위천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범위 : 2019. 04. 12. ~ 감사일 현재
- 감사기간 : 2022. 04. 18. ~ 04. 21.(4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6명

II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23건 / 시정 10건, 주의 13건
- 재정상 조치 : 13,858천원 / 환수 1,386천원, 부과 12,472천원
- 신분상 조치 : 경징계 1명, 훈계 2명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1) 회계질서 문란 및 회계서류 작성·관리 소홀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지출원 등 날인 없이 지출 / 회계서류 분실

-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회계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 위천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16건, 1,362,747천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지출결의서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재무관 또는 지출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출서류 등에 상당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회계관서에서 5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 위천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편철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캐비닛 등에 방치함으로써,
- □□ □□□ 정비공사 관급자재(전석) 구입 등 54건, 174,791천원에 대하여 지출결의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유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 회계관련 서류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격려금 지급은 이재민,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자원봉사자 등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화환·화분 등은 유관기관장의 퇴임, 전출입이나 국경일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음에도,
- 상품권 등 물품구매(18건, 5,895천원) 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자가 아닌 자 등에게 5건, 900천원의 격려금과 6건, 150천원의 화환·꽃다발 등을 지급(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3)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대리 미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승인 후 지출

-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무관이나 지출원이 연가·외출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원인행위 34건, 31,545천원과 지급명령 3건, 2,532천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부재중인 재무관, 지출원의 아이디로 승인함으로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② 농정분야

1) 농지원부 관리 업무 소홀

농지원부 이용 변동사항 334건 미정비

-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농지원부의 관리기관장(시·구·읍·면장)은 연 1회 이상 농지원부의 이용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나,
- 위천면에서는 농지원부의 이용에 변동사항(344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③ 물품관리분야

1) 미승인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정수배정 승인 등 절차 없이,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 정수관리대상물품은 회계연도 마다 소관 예산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물품관리관의 정수배정 심사(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여야 함에도,
- 위천면에서는 2건 5,930천원 상당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매입하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도 반영하지 아니하고 정수물품 대체취득 승인 요청 및 배정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채 물품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분야

1)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 소홀

설계서 원가계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과다)계상

- 총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인 '황산2구 경로당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원가계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 '□□□ □□□ 정비공사'는 관급자가 별도 설치하는 관급자재를 대상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포함하여 61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 주변 정비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하여 대상액의 1.85%(313천원)로 계상하여야 하나, 2.93%(497천원)로 183천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1,356천원 과다 지급

- '◇◇◇ ◇◇◇◇ 농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사석(전석)쌓기 구간에 대하여 토사유출 및 세굴방지 목적으로 계획된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 처리 하였으며,
- '◆◆◆◆ 건너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수로 구조물의 신축과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처리하여 총 1,356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되었음.

5] 세정분야

1)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2,456,130원 과세 누락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신축 등 취득한 물건들에 대해 신고 되지 아니한 물건들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2,456,13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상속재산 취득세, 4,644,030원 과세 누락

-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안내문은 발송하였으나, 신고기간 경과 후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에 따른 취득세 4,644.03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 재산세 부적정 감면, 220,680원 과세누락

-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위천면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감면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면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220,680원을 과세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4)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주민세, 12,472,770원 과세 누락

-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의 익일부터 제척기간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 위천면에서는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전년 과세대장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세(사업소분) 12,472,77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6] 사회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수급자 급여에 대한 본인관리 미확인 및 급여관리자 미지정

- 읍·면장은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 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이외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사용) 실태를 대상 주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나,
- 위천면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 이후 신규 책정, 전입 등 추가 확인 대상 6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본인관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급여관리자를 미지정 하는 등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또는 기간경과)

-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위천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인 □□□ 등 6가구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종결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미이행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경로당 운영비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장기경로당 등 9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경로당 등 9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세금 계산서 미첨부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0건, 5,756,000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음.

7] 기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소홀

유급휴일 부적정 산정 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

-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과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위천면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유급 휴일 부적정 산정 2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 등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